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1.26(화) 10:00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 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**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 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**

**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**

**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**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**3. 제안 이유**

- 최근 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

**4. 주요내용**

가. 조례 목적에 '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'추가(안 제1조)

나. 위원회의 기능 중 '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' 추가(안 제2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 위촉대상자 추가(안 제3조)

-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
라.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추가(안 제8조)

**5. 검토의견**

- '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

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